

瑞山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
**審 查 報 告 書**

2000. 11. 7  
總務委員會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口字 : 2000. 11. 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2000. 11. 4
- 라. 上程日字 : 2000. 11. 7

## 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稅 務 課 長 文 哲 柱)

### 가. 改 正 理 由

- 국가유공자의 상이 등급이 당초 6등급에서 7등급으로 1등급이 추가 신설됨(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2000.6.27)
-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7등급으로 판정 받은 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으로 자동차세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산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.

### 나. 主 要 骨 子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“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”을 “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”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코자 함(안 제2조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련법령에 개정 명시되어 있는 상이 등급은 상이 정도의 차이뿐이고, 국가유공자로서 본 법령에 상이 등급이 1등급 추가 신설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
- 「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」을 「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」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78 호
의결년월일	2000.11. . (제 회)

##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0. 11. 3 .

#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3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국가유공자등에우뒹지원에관한법률·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차원에서 자동차세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국가유공자등에우뒹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“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” 을 “상이등급 1급 내지 7급”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함(안 제2조).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근거법령

· 지방세법 제9조, 행정자치부표준안(세정13400 - 642)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### 다. 입법예고

· 예고기간 : 2000. 5. 10 ~ 2000. 5. 30(20일간)

· 예고결과 : 의견 제시 사항 없음

##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중 “1급 내지 6급” 을 “1급 내지 7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